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574 |
|----------|--------|

제안년월일 : 2023년 3월 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4조의 노동자 자녀 장학금 사업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연례적으로 지원해온 사업을 관련 노동단체와 충분한 의견조율 없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유지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3조의 단체·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p> <p>5. (생략)</p> | <p>제4조(지원사업) ① ----- 노동단체가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 삭 제 ></p> <p>4. (현행 제5호와 같음)</p> | <p>제4조(지원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현행 제4호와 같음)</p> <p>5. (현행 제5호와 같음)</p>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체·법인”을 “노동단체”로 한다.

제4조의 제목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체·법인”을 “노동단체”로 하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노동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노동단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이미 교부되었을 때에는 해당하는 보조금과 반환 전까지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시장은 노동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고, 납부기한 내에 제재부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단체·법인에</u>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 <p>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노동단체에</u>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
| <p>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3조의 <u>단체·법인</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 <p>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u>노동단체</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 신 설 > | <p>③ <u>보조금을 지원받은 노동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
| < 신 설 > | <p>④ <u>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노동단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
| < 신 설 > | <p>⑤ <u>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u></p> |
| < 신 설 > | <p>제5조(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이미 교부되었을 때에는</p> |

| 현행 | 개정안 |
|---|---|
| <p>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 <p>해당하는 보조금과 반환 전까지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② 시장은 노동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고, 납부기한 내에 제재부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p> |